

## 변경대비표

### 1. 집합투자기구 명칭:

명칭	종류 (클래스)		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
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 (펀드코드: 56288)	A	수수료선취 오프라인	AE273
	A-E	수수료선취 온라인	BG296
	A-G	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	BP130
	C	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	AE245
	C-E	수수료미징구 온라인	AS482
	C-G	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	BP131
	C-W	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	AR355
	C-F	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	AE246
	C-P	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	AH290
	C-Pe	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	BG300
	S	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	AP748

### 2. 주요 변경 내용:

#### ① 투자설명서

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-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( $5.97\% \rightarrow 6.16\%$ ), 위험등급변경 없음(4등급 유지)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기타 업무관련 회사 변경

#### ② 간이투자설명서

-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( $5.97\% \rightarrow 6.16\%$ ), 위험등급변경 없음(4등급 유지)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#### ③ 신탁계약서
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### 3. 변경대상 서류 :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, 신탁계약서

### 4. 변경시행일: **2022.06.10.**

## [신탁계약서 변경대비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신탁계약서 전반	<u>제 X 영업일</u>	<u>X 영업일</u>
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	<p>① &lt;생략&gt;</p> <p>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③ &lt;생략&gt;</p>	<p>① &lt;좌동&gt;</p> <p>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③ &lt;좌동&gt;</p>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&lt;생략&gt;</p> <p>2.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----- 사채 및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3.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p> <p>4. ~ 11. &lt;생략&gt;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&lt;좌동&gt;</p> <p>2.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----- 사채 및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3.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p> <p>4. ~ 11 &lt;좌동&gt;</p> <p>② &lt;좌동&gt;</p>
제19조(운용 및 투자제한)	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&lt;생략&gt;</p> <p>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-----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가. &lt;생략&gt;</p> <p>나. 지방채증권, -----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른 주택저당채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&lt;좌동&gt;</p> <p>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-----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가. &lt;좌동&gt;</p> <p>나. 지방채증권, -----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p>

	<p>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----- 투자하는 경우</p> <p>다. &lt;생략&gt;</p> <p>3. ~ 9. &lt;생략&gt;</p>	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----- 투자하는 경우
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<p>①-----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•계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</u>상에 계상된 투자신탁-----.</p> <p>② ~ ③ &lt;생략&gt;</p>	<p>①-----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•계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</u>상에 계상된 투자신탁-----.</p> <p>② ~ ③ &lt;좌동&gt;</p>
제32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대차대조표</u></p> <p>2. 손익계산서</p> <p>3.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재무상태표</u></p> <p>2. 손익계산서</p> <p>3.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② &lt;좌동&gt;</p>
제39조(보수)	<p>① &lt;생략&gt;</p> <p>②-----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대차대조표</u>상에 계상하고 -----.</p> <p>③ &lt;생략&gt;</p>	<p>① &lt;좌동&gt;</p> <p>②-----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재무상태표</u>상에 계상하고 -----.</p> <p>③ &lt;좌동&gt;</p>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<p>① &lt;생략&gt;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&lt;생략&gt;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&lt;<u>신설</u>&gt;</p> <p>3. ~ 5. &lt;생략&gt;</p> <p>③ ~ ⑪ &lt;생략&gt;</p>	<p>① &lt;좌동&gt;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&lt;좌동&gt;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</p> <p>3. ~ 5. &lt;좌동&gt;</p> <p>③ ~ ⑪ &lt;좌동&gt;</p>
부칙	<신설>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## [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투자설명서전 반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 항 반영	대차대조표 <u>제X영업일</u>	재무상태표 <u>X영업일</u>
<b>요약정보</b>			
- 투자비용 -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 - 운용전문인 력	업데이트	-	결산 및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<b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5. 운용전문 인력	업데이트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	자본시장법 시 행령 개정사항 반영	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	<삭제>
10.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위 험 라. 이 집합투 자기구에 적합 한 투자자 유 형	결산에 따른 수 익률 변동성 변 경	이 투자신탁은 <u>최근 결산일(2021년 4월 17일)</u>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을 측정한 <u>연환산 표준편차가 5.97%</u> 로 산출되어 6단계의 위험등급 중 4등급(보통 위험)으로 분류되었습니다.	이 투자신탁은 <u>최근 결산일(2022년 4월 17일)</u>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을 측정한 <u>연환산 표준편차가 6.16%</u> 로 산출되어 6단계의 위험등급 중 4등급(보통 위험)으로 분류되었습니다.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 기구에 부과되 는 보수 및 비 용	업데이트		결산에 따른 업데이트
<b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 정 및 환매현 황 3. 집합투자기 구의 운용실적 (세전 기준)	업데이트	-	결산 및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<b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 자에 관한 사 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	업데이트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
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		
2.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 항 나. 기타 업무 의 수탁회사	기타업무위탁 삭제에 따른 변 경	한국투자신탁운용(기타 전산업무)	<삭제>
6. 채권평가회 사에 관한 사 항	기타정정	-	채권평가회사 주소 및 명칭 정정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3. 집합투자기 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 서 (2) 자산운용 보고서	자본시장법 시 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(다)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~ 6. &lt;생략&gt;</p> <p>7. 매월의 주식, 주식 외의 증권 및 장내파 생상품별 거래의 투자증개업자별 거래금액 · 수수료 및 그 비중</p> <p>8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</p> <p>9.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(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)</p> <p>10.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</p> <p>11. ~ 12의2. &lt;신설&gt;</p> <p>11.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</p>	<p>(다)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~ 6. &lt;좌동&gt;</p> <p>7.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</p> <p>8. 투자신탁의 업종별 · 국가별 투자내역</p> <p>9. 투자신탁의 투자전략</p> <p>10.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</p> <p>11. 투자신탁의 구조. 다만, 회계기간 개시 일로부터 3개월, 6개월,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 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12. 투자신탁의 유동성 위험</p> <p>12의2. 투자신탁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</p> <p>13.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</p>
3. 집합투자기 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	자본시장법 개 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업자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한 경 우 아래의 공시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 다.  [수시공시사항] (가) <생략> (나)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신설>  (다) ~ (차) <생략>	집합투자업자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한 경 우 아래의 공시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 다.  [수시공시사항] (가) <좌동> (나)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 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 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 (다) ~ (차) <좌동>

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	업데이트		결산 및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

## [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간이투자설명서전반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u>제X영업일</u>	<u>X영업일</u>
요약정보			
- 투자비용 -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 - 운용전문인력	업데이트	-	결산 및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